##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7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이원택・김경만・유동수

양정숙 · 장경태 · 전용기

한병도 · 신정훈 · 양양영

윤재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 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 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 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신설).
- 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4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의9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제44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
	<u>정할 수 있다.</u>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
	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1
	1조의5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12. (생 략) <신 설>

<u>13.</u>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제36조의9(사업) ①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6. (생략)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새만 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 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 야 한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 ③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지 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12. (현행과 같음)
-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에 관한 사항
-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 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 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 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 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 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 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 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제583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u>「국토의 계획 및 이용</u>
<u>에 관한 법률」,</u>
아니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한다.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 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u>외국인</u> 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 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u>외국인</u>
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
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② ~ ⑤ (현행과 같음)